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1. 2

나. 제 출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11. 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999. 11. 10) 상정

○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5. 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 개정이유

○ 부천시립예술단의 총정원에 대한 증감없이 정원을 조정하여 국내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천필의 정원을 증원

○ 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예술단의 각 단체별 업무를 분산 운영하였으나 단무장과 사무단원을 합동사무실 체계인 "예술단사무국"을 신설하여 예술단 전체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임

□ 주요골자

○ 시립교향악단 정원 90명에서 98명으로 8명 증가, 부지휘자는 삭제하고, 단무장은 예술단사무국으로, 일반단원 57명을 67명으로 조정

○ 시립합창단 정원 70명에서 62명으로 하여 8명 감소, 부지휘자는 삭제, 단무장은 예술단사무국으로 조정, 차석단원 4명 신설, 일반단원 61명을 51명으로 조정

○ 청소년관현악단 정원 64명에서 61명으로 3명 감소, 연습안무자 61명을 51명으로 조정

○ 청소년관현악단 정원 64명에서 61명으로 3명 감소, 연습안무자, 단무장, 사무단원 삭제

○ 청소년합창단 정원 66명에서 62명으로 4명 감소, 성악지도 및 안무지도는 삭제, 단무장 및 사무단원은 예술단사무국으로 조정

○ 부천시립무용단 정원 54명에서 52명으로 2명 감소. 단무장, 일반단원 1명 삭제

○ 예술단사무국 정원을 9명으로 예술단 전체정원 변동없이 예술단 내 각 단체별 정원을 일부 감소하여 통합사무실 체계로 공연기획팀장, 홍보섭외팀장, 운영관리팀장 각 1명 및 사무단원 3명, 악기계 1명, 악보담당 2명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규모를 3관에서 4관으로 확대하고자 교향악단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인 정원의 증감이 없으나, 예산상의 증가는 없는가?	○ 전혀 없음
○ 교향악단 정원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악기구입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가?	○ 팀파니, 피아노 등 들고 다닐 수 없는 악기만 시에서 구입하고, 바이올린, 첼로, 색소폰 등은 개인악기로 단원증원에 따른 악기구입예산은 필요치 않음
○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정하는 것이 바람	○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며 우리 의견과 내용이 일치함. 개정안대로 개정해도 용역결과에 반하는 것은 없으며, 용역결과에

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은?	관계없이 정원조정이 필요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현재 분산 운영 중인 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예술단 등 각 단체의 업무를 예술단사무국으로 통합하면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가?	○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곳으로 통합 운영하면 근무환경이나 자세, 태도가 쇄신되어 운영이 더 잘 될 것이다.
○ 교향악단은 합창단, 청소년관현악단, 청소년합창단, 무용단 등 4개 단체에서 17명을 줄여, 사무국까지 포함하여 17명을 증원하였음. 이는 통합논리와 상반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교향악단이 본 기능을 가지려면 정원증가가 필요하며, 합창단은 조금 줄여도 됨. 그리고 예술단체 운영을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단원이 증원되어도 이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으므로 개정안대로 조정

나. 반대토론

○ 부천필의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결과를 검토한 후 조정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2호
의결년월일	2000. 5. 3 (제78회)

제출년월일 : 99. 11.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개정이유

○ 부천시립예술단의 정원조정 및 예술단사무국을 신설하여 예술의 도시 부천의 기반을 조성코자 일

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개정

□ 주요골자

○ 시립교향악단 일반단원 57명을 67명으로 하고 시립합창단 일반단원 61명을 51명으로 조정

○ 예술단 단체별 단무장 및 사무원이 분리 운영되는 것을 통합운영 체제로 변경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1 중 "지휘자, 부지휘자, 제1악장, 제2악장 및 단무장"을 "지휘자, 제1악장, 제2악장"으로 "일반단원 57명"을 "일반단원 67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2 중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를 "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로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수석단원 4명, 일반단원 61명"을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수석단원 4명, 차석단원 4명, 일반단원 51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3 중 "안무자, 훈련장, 단무장"을 "안무자, 훈련장"으로 "일반단원 51명"을 "일반단원 50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4 중 "지휘자, 단무장, 연습안무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를 "지휘자 1명의 간부단원과"로 "사무단원 1명, 비상임단원 60명"을 "비상임단원 60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5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성악지도, 안무지도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사무단원 1명, 비상임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비상임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성악지도는 합창단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 예술단체는 예술단사무국이 총괄 관리한다. 사무국은 공연기획팀장, 홍보섭외팀장, 운영관리팀장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사무단원 3명, 악보담당 2명, 악기계 1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2항 중 "각 단원을 지휘하고 안무를 처리한다."를 "각 단원을 지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제2항 중 "단, 악보담당 직원과 사무단원은 예외로 한다."를 삭제

제7조제3항 중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를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생략)	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제1악장, 제2악장 및 단무장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제1수석단원 14명, 제2수석단원 14명, 일반단원 57명이내로 구성한다. 단, 제1수석단원의 결원이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량이 우수한 단원 중에서 제1수석 대행자를 둘수 있다.	1. ·····지휘자, 제1악장, 제2악장 ·····일반단원 67명··
2. 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수석단원 4명, 일반단원 61명 이내로 구성한다.	2. ····· 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수석단원 4명, 차석단원 4명, 일반단원 51명·····
3. 무용단은 안무자, 훈련장, 단무장,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51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안무자, 훈련장,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50명·····
4. 청소년관현악단은 지휘자, 단무장, 연습안무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사무단원 1명, 비상임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지휘자, 1명의 간부단원과 비상임단원 60명 이내·····
5. 청소년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성악지도, 안무지도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사무단원 1명, 비상임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5.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비상임단원 60명·····
제3조(구성) ②~③(생략)	제3조(구성) ②~③(현행과 같음)
④(신설)	④각 예술단체는 예술단사무국이 총괄 관리한다. 사무국은 공연기획 팀장, 홍보섭외팀장, 운영관리팀장 각 1명과 사무단원 3명, 악보담당 2명, 악기계 1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생략)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②교향악단, 합창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하고 안무를 처리한다.	②·····각 단원을 지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촉기간) ①(생략)	제7조(위촉기간) ①(현행과 같음)
②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②·····

현 행	개 정 안
만료된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악보담당단원과 사무단원은 예외로 한다.	····· ·····할 수 있다.(이하삭제)
③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③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